|  |  |  |
| --- | --- | --- |
| **사회보험비 신고납부 관리규정**  인력자원사회보장부령 제 20호  《사회보험비 신고납부 관리규정》은 이미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제 114차 부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됨을 공포한다.  부장 윤위민(尹蔚民)  2013년 9월 26일  **제1장 총 칙**  **제1조** 사회보험비의 신고 및 납부관리작업을 규범화할 목적으로《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이하‘사회보험법’), 《사회보험비 징수잠행조례》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고용단위의 비용납부신고 진행 및 사회보험처리기구의 사회보험비 징수에 본 규정을 적용한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사회보험비란, 고용단위 및 그 근로자가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한 근로자의 기본양로보험비, 기본의료보험비, 공상보험비, 실업보험비 및 출산보험비를 가리킨다.  **제3조**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사회보험비 납부신고, 심사 등의 작업을 담당한다.  각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사회보험처리기구의 사회보험비 징수를 결정하고, 사회보험처리기구는 법에 따라 사회보험비를 징수해야 한다.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사회보험비 징수를 담당하며, 통일 징수를 실시한다.  **제2장 사회보험비 신고**  **제4조** 고용단위는 매월 규정한 기한 내에 현지 사회보험처리기구에서 비용납부신고를 처리해야 한다. 신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고용단위 명칭, 조직기구대마, 주소 및 연락처  (2) 고용단위 계좌개설 은행, 예금주 및 계좌번호  (3) 고용단위가 납부하는 보험 종류, 납부기수, 요율, 납부금액  (4) 직원명단 및 직원 납부 현황  (5) 사회보험처리기구가 규정한 기타 사항.  비용납부연도 내에, 고용단위에서의 첫 신고 이후의 나머지 달에는 전관(前款)에서 규정한 사항 중 변동상황만 신고하고, 변동상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제5조**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비는 고용단위가 대신 신고한다. 근로자 대신 신고해야 하는 사항에는 근로자 이름, 사회보장번호, 용역유형, 연락처, 원천징수명세표 등이 포함된다.  고용단위가 근로자 대신 신고한 납부명세 및 변동상황은 근로자 본인의 서명 허가를 거쳐야 하며, 참고용으로 고용단위에서 보관해야 한다.  **제6조** 고용단위가 사회보험처리기구에 가서 사회보험납부신고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회보험처리기구의 동의를 거쳐 신고를 우편으로 부칠 수 있다. 우편신고는 도착지의 소인일자를 실제신고일자로 한다.  조건을 갖춘 지역, 고용단위도 사회보험처리기구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7조** 고용단위는 사회보험처리기구에 본 규정 제4조, 제5조에서 명시한 신고사항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고용단위가 제출한 신고서류는 완전히 갖춰져야 하며, 납부기수와 요율 규정에 부합되고, 기입신고금액관계가 일치하는 경우,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심사비준 후, 비용납부 통지서를 발급한다. 고용단위가 제출한 신고서류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고용단위에 반환하여 보충하도록 한다.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사회보험 감사작업 과정 중, 고용단위가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아 탈세를 초래하거나 사회보험비를 적게 납부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사회보험법제 86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 고용단위는 고용일로부터 30일 내에 그 근로자를 위해 사회보험등기 신청 및 사회보험비 납부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사회보험등기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처리기구에서 고용단위가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비에 대해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고용단위가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비 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일시적으로 그 단위가 전월에 납부한 금액의 110%를 미지급 금액으로 확정할 수 있으며, 전월 납부한 비용이 없는 경우, 사회보험처리기구가 그 단위의 경영상황, 직원 수, 현 지역의 전년도 근로자 평균임금 등 유관상황에 따라 미지급 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 고용단위가 신고수속을 보충처리 한 후, 사회보험처리기구에서 규정에 따라 결산하도록 한다.  **제9조** 고용단위가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기한 내에 사회보험비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는 연기할 수 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제거된 후에는 즉시 사회보험처리기구에 신고해야 한다.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상황을 명확하게 조사하고, 심사 비준하도록 한다.  **제3장 사회보험비 납부**  **제10조** 고용단위는 사회보험처리기구가 발급한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규정한 기한 내에 다음에 나열한 방식 중 하나를 채택하여 사회보험비를 납부해야 한다.  (1) 그 계좌개설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구에 납부  (2) 사회보험처리기구와 약정한 기타 방식으로 납부.  사회보험처리기구, 고용단위는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구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위탁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구는 사회보험처리기구에서 발급한 위탁접수증빙을 근거로 고용단위와 그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한 사회보험비를 구분하여 납부한다.  **제11조**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비는 고용단위에서 원천징수한다. 고용단위는 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 이행 시, 임의의 단위 또는 개인은 간섭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된다.  고용단위가 제때에 사회보험비 전액을 대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처리기구는 그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을 내리며, 체납일로부터 0.5‰의 체납금을 추가 징수한다. 고용단위는 근로자가 체납금을 책임지도록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 징수한 사회보험비는 사회보험처리기구가 규정에 따라 개설한 사회보험기금 수입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사회보험처리기구는 관련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은 기금을 법에 따라 개설한 사회보험기금 재정전문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제13조**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이미 징수한 사회보험비에 대해 고용단위가 실제 납부한 금액(원천징수 포함), 원천징수 명세표 및 국가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기장을 진행한다.  **제14조** 고용단위는 매월 납부한 사회보험비의 명세상황을 근로자 본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고용단위는 매년 본 단위 전년사회보험 비용납부상황을 본 단위 직원대표대회에 통보하거나 본 단위 주소의 눈에 띄는 위치에 공포하여 직원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제때에, 완벽하게 고용단위 및 그 근로자의 사회보험 납부 현황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며, 납부현황은 정기적으로 고용단위 및 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고용단위 및 근로자는《사회보험개인권익 기록관리방법》등 규정에 근거하여 납부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최소 매년 1회 사회보험비 징수현황을 발표하여,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제때에 전액 납부하지 않은 사회보험비의 처리**  **제16조** 고용단위가 다음의 상황 중 하나에 포함될 경우,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체납사실을 조사한 날로부터 5업무일 내에 사회보험비 추가납입 통지를 발송하여, 고용단위가 통지를 수령한 후 5업무일 내에 추가납입 하도록 명령하고 동시에 그 기한 내에 여전히 납입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험법 제 63조, 제 86조 규정에 따라 처리함을 고지하도록 한다.  (1) 사회보험비를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신고 후, 제때에 전액의 사회보험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직원 수 누락, 납부기수 등 사항을 허위 보고하여 사회보험비를 적게 낸 경우  **제17조** 고용단위가 본 규정 제 16조 규정에 따라 기한 내에 추가납부 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사회보험법 제 63조 제 2관의 규정에 따라 고용단위가 개설한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구에 그 예금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제18조**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조회결과에 근거하여 소속 사회보험행정부문에 사회보험비 이체(划拨) 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다음에 열거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고용단위 명칭, 법정대표인, 주소, 연락처  (2) 고용단위 계좌개설 은행, 예금주 및 계좌번호  (3) 이체신청 사실, 이유 및 근거  (4) 이체 신청한 사회보험비 금액  (5) 사회보험행정부문이 요구한 기타 자료의 제공  **제19조** 사회보험행정부문은 사회보험처리기구의 이체신청을 접수한 후,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규정에 따라, 제때에 사회보험비 이체결정을 내려야 하며, 고용단위의 계좌개설 은행 또는 그 금융기관에 이체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20조** 사회보험행정부문이 사회보험비 이체 결정을 내린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의 규정에 따라 고용단위에 송달하고, 서류사본을 사회보험처리기구에 보내야 한다.  **제21조** 조회를 거쳐, 고용단위의 계좌 잔액이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비 금액보다 적거나 이체 후 고용단위가 여전히 사회보험비 전액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처리기구는 고용단위에 저당, 담보의 형식으로 보증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고용단위는 사회보험처리기구가 인가한 평가기구에 가서 그 담보자산 또는 저당자산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사회보험처리기구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험비 전액을 충분히 청산할 수 있는 경우, 양측은 법에 따라 저당계약 또는 담보계약을 체결한다. 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저당등기 또는 담보등기를 진행해야 한다.  **제23조** 사회보험처리기구와 고용단위가 저당계약 또는 담보계약 체결 후, 반드시 비용납부연장협의를 체결해야 하며, 약정협의가 만기되었음에도 고용단위가 여전히 전액의 사회보험비를 청산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처리기구는 협의만료 시의 시장가격을 참조하여 저당자산, 담보자산 환가 (折价) 또는 경매, 매각 소득으로 사회보험비를 상계한다.  비용납부연장협의 기한은 최장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 고용단위가 담보를 제공하고 비용납부연장협의를 체결한 경우, 그 직원은 비용납부연장기간 내에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제25조** 고용단위에 명령을 내렸음에도 여전히 추가납부하지 않고 다음의 상황 중 하나에 포함되는 경우,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사회보험법 제 63조 제 3관 규정에 따라 소재지 관할권의 인민법원에 차압, 가압, 고용단위자산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경매소득으로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비, 체납금을 상계할 수 있다.  (1) 조회를 통해 고용단위가 개설한 은행계좌 잔액이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금액보다 적고, 담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2) 이체 후, 고용단위가 여전히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비 전액을 청산하지 않고 담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3) 비용납부연장협의가 만료되고, 담보자산의 시장가격 또는 권리형황에 변동이 생겨 고용단위가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비 전액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  **제26조** 사회보험처리기구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경우, 다음에 나열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강제집행신청서  (2) 고용단위가 체납한 사회보험비 및 체납금을 추가 징수한 사실, 이유 및 근거  (3) 사회보험처리기구가 지정한 기일에 추가 납입한 통지서  (4) 고용단위의 의견  (5) 고용단위가 본 규정 제 25조에서 나열한 상황에 속할 경우 관련 자료  (6) 강제집행을 신청한 고용단위의 자산상황  (7) 법률, 행정법규 규정 및 인민법원이 요구한 기타 자료  강제집행신청서에는 사회보험처리기구 담당자의 서명, 사회보험처리기구의 도장직인과 날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27조** 사회보험행정부문 및 그 소속 직원이 사회보험비 이체을 결정 할 시, 다음에 나열한 행위 중 하나에 포함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규정에 근거하여 상급사회보험행정부문 또는 유관 부문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 인원 및 기타 직접책임 인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분한다.  고용단위 또는 개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범죄에 해당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법정절차를 위반하고 사회보험비 이체결정을 내린 경우  (2) 규정 기한 내에 즉시 사회보험비 이체결정을 내리지 않고, 고용단위 계좌개설 은행 또는 금융기구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3) 이체 결정을 내린 사회보험비 금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4) 당사자에게 정보를 유출하여 사회보험비 이체에 영향을 미친 경우  (5) 법률,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한 기타 행위  **제28조** 사회보험처리기구 및 그 소속근로자의 행위가 다음에 나열한 상황 중 하나에 포함될 경우, 사회보험행정기구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주관 인원 및 기타 직접책임 인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분한다.  (1) 본 규정 제 8조에 근거하여 심사하지 않았거나 고용단위가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비 금액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  (2) 이미 징수한 사회보험비에 대해 국가규정에 따라 기장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3) 사회보험비를 체납한 고용단위가 기한 내에 법에 따라 사회보험비를 추가납부 또는 체납금을 추가징수 하지 않은 경우  (4) 인민법원 강제집행 신청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5) 담보계약 체결 및 비용납부연장협의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6) 규정에 따라 심사, 처리하지 않은 담보자산  (7) 법률, 법규 및 규정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  **제29조** 사회보험처리기구가 독단적으로 사회보험비 납부기수, 요율을 변경하여 사회보험비를 적게 또는 많게 수취한 경우, 사회보험행정부문은 납부가 필요한 사회보험비는 추가징수 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는 사회보험비는 환급될 수 있도록 사회보험처리기구에 명령을 내려 처리하도록 지시한다.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 인원 및 기타 직접책임 인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분한다.  **제30조** 고용단위가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처리기구에 납부신고를 진행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행정부문은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고용단위가 사회보험비를 제때에 정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사회보험법 제 86조 규정에 의거하여 기한내 납부 또는 벌충하도록 명령을 내리며, 미납일로부터 매일 0.5‰의 체납금을 추가징수한다. 기한이 넘도록 여전히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행정부문은 체납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1조** 고용단위가 매월 원천징수한 사회보험비 명세상황을 근로자 본인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본 단위 전년사회보험 납부상황을 규정에 따라 통보, 공포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사회보험행정부문에 신고, 제소할 권리를 지닌다.  **제6장 부 칙**  **제32조** 세무기관에서 사회보험비를 징수한 경우,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제때에 고용단위 및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비 금액을 세무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제때에 사회보험처리기구에 고용단위 및 근로자의 납부 현황을 제공해야 한다.  사회보험처리기구는 매월 단위와 개인이 납부한 실업보험비 상황을 실업보험대우를 지급하는 책임처리기구에 제공해야 한다.  **제33조** 개인신분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회보험비신고 및 납부방법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34조** 본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원(原) 노동사회보장부의《사회보험비 신고납부관리잠행방법》(노동사회보장부령제2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  | **社会保险费申报缴纳管理规定**  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令第20号  《社会保险费申报缴纳管理规定》已经人力资源社会保障部第114次部务会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3年11月1日起施行。  部长 尹蔚民  2013年9月26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规范社会保险费的申报和缴纳管理工作，根据《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以下简称社会保险法）、《社会保险费征缴暂行条例》，制定本规定。  **第二条** 用人单位进行缴费申报和社会保险经办机构征收社会保险费，适用本规定。  本规定所称社会保险费，是指由用人单位及其职工依法参加社会保险并缴纳的职工基本养老保险费、职工基本医疗保险费、工伤保险费、失业保险费和生育保险费。  **第三条** 社会保险经办机构负责社会保险缴费申报、核定等工作。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决定由社会保险经办机构征收社会保险费的，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依法征收社会保险费。  社会保险经办机构负责征收的社会保险费，实行统一征收。  **第二章 社会保险费申报**  **第四条** 用人单位应当按月在规定期限内到当地社会保险经办机构办理缴费申报，申报事项包括：  （一）用人单位名称、组织机构代码、地址及联系方式；  （二）用人单位开户银行、户名及账号；  （三）用人单位的缴费险种、缴费基数、费率、缴费数额；  （四）职工名册及职工缴费情况；  （五）社会保险经办机构规定的其他事项。  在一个缴费年度内，用人单位初次申报后，其余月份可以只申报前款规定事项的变动情况；无变动的，可以不申报。  **第五条** 职工应缴纳的社会保险费由用人单位代为申报。代职工申报的事项包括：职工姓名、社会保障号码、用工类型、联系地址、代扣代缴明细等。  用人单位代职工申报的缴费明细以及变动情况应当经职工本人签字认可，由用人单位留存备查。  **第六条** 用人单位到社会保险经办机构办理社会保险缴费申报有困难的，经社会保险经办机构同意，可以邮寄申报。邮寄申报以寄出地的邮戳日期为实际申报日期。  有条件的地区，用人单位也可以按照社会保险经办机构的规定进行网上申报。  **第七条** 用人单位应当向社会保险经办机构如实申报本规定第四条、第五条所列申报事项。用人单位申报材料齐全、缴费基数和费率符合规定、填报数量关系一致的，社会保险经办机构核准后出具缴费通知单；用人单位申报材料不符合规定的，退用人单位补正。  社会保险经办机构在开展社会保险稽核工作过程中，发现用人单位未如实申报造成漏缴、少缴社会保险费的，按照社会保险法第八十六条的规定处理。  **第八条** 用人单位应当自用工之日起30日内为其职工申请办理社会保险登记并申报缴纳社会保险费。未办理社会保险登记的，由社会保险经办机构核定其应当缴纳的社会保险费。  用人单位未按照规定申报应缴纳的社会保险费数额的，社会保险经办机构暂按该单位上月缴费数额的110%确定应缴数额；没有上月缴费数额的，社会保险经办机构暂按该单位的经营状况、职工人数、当地上年度职工平均工资等有关情况确定应缴数额。用人单位补办申报手续后，由社会保险经办机构按照规定结算。  **第九条** 用人单位因不可抗力，不能按期办理缴费申报的，可以延期申报；不可抗力情形消除后，应当立即向社会保险经办机构报告。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查明事实，予以核准。  **第三章 社会保险费缴纳**  **第十条** 用人单位应当持社会保险经办机构出具的缴费通知单在规定的期限内采取下列方式之一缴纳社会保险费：  （一）到其开户银行或者其他金融机构缴纳；  （二）与社会保险经办机构约定的其他方式。  社会保险经办机构、用人单位可以与银行或者其他金融机构签订协议，委托银行或者其他金融机构根据社会保险经办机构开出的托收凭证划缴用人单位和为其职工代扣的社会保险费。  **第十一条** 职工应当缴纳的社会保险费由用人单位代扣代缴。用人单位依法履行代扣代缴义务时，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干预或者拒绝。  用人单位未按时足额代缴的，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责令其限期缴纳，并自欠缴之日起按日加收0.5‰的滞纳金。用人单位不得要求职工承担滞纳金。  **第十二条** 征收的社会保险费，应当存入社会保险经办机构按照规定开设的社会保险基金收入户。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按照有关规定定期将收到的基金存入依法开设的社会保险基金财政专户。  **第十三条** 社会保险经办机构对已征收的社会保险费，根据用人单位实际缴纳额（包括代扣代缴额）和代扣代缴明细，按照国家有关规定进行记账。  **第十四条** 用人单位应当按月将缴纳社会保险费的明细情况告知职工本人。  用人单位应当每年向本单位职工代表大会通报或者在本单位住所的显著位置公布本单位全年社会保险费缴纳情况，接受职工监督。  **第十五条** 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及时、完整、准确地记录用人单位及其职工的缴费情况，并将缴费情况定期告知用人单位和职工。用人单位和职工有权按照《社会保险个人权益记录管理办法》等规定查询缴费情况。  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至少每年一次向社会公布社会保险费征收情况，接受社会监督。  **第四章 未按时足额缴纳社会保险费的处理**  **第十六条** 用人单位有下列情形之一的，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于查明欠缴事实之日起5个工作日内发出社会保险费限期补缴通知，责令用人单位在收到通知后5个工作日内补缴，同时告知其逾期仍未缴纳的，将按照社会保险法第六十三条、第八十六条的规定处理：  （一）未按规定申报且未缴纳社会保险费的；  （二）申报后未按时足额缴纳社会保险费的；  （三）因瞒报、漏报职工人数、缴费基数等事项而少缴社会保险费的。  **第十七条** 用人单位未按照本规定第十六条规定的期限补缴的，社会保险经办机构可以按照社会保险法第六十三条第二款的规定，向用人单位开户银行或者其他金融机构查询其存款账户。  **第十八条** 社会保险经办机构可以根据查询结果向所属的社会保险行政部门申请作出划拨社会保险费的决定，并提交下列材料：  （一）用人单位名称、法定代表人、地址、联系方式；  （二）用人单位开户银行、户名及账号；  （三）申请划拨的事实、理由及依据；  （四）申请划拨的社会保险费数额；  （五）社会保险行政部门要求提供的其他材料。  **第十九条** 社会保险行政部门接到社会保险经办机构划拨申请后，应当按照《中华人民共和国行政强制法》的规定，及时作出划拨社会保险费决定，并书面通知用人单位开户银行或者其他金融机构予以划拨。  **第二十条** 社会保险行政部门作出的划拨社会保险费决定，应当按照《中华人民共和国行政强制法》的规定送达用人单位，并抄送社会保险经办机构。  **第二十一条** 经查询，用人单位账户余额少于应当缴纳的社会保险费数额的，或者划拨后用人单位仍未足额清偿社会保险费的，社会保险经办机构可以要求用人单位以抵押、质押的方式提供担保。  **第二十二条** 用人单位应当到社会保险经办机构认可的评估机构对其抵押财产或者质押财产进行评估，经社会保险经办机构审核后，对能够足额清偿社会保险费的，双方依法签订抵押合同或者质押合同；需要办理登记的，应当依法办理抵押登记或者质押登记。  **第二十三条** 社会保险经办机构与用人单位签订抵押合同或者质押合同后，应当签订延期缴费协议，并约定协议期满用人单位仍未足额清偿社会保险费的，社会保险经办机构可以参照协议期满时的市场价格，以抵押财产、质押财产折价或者以拍卖、变卖所得抵缴社会保险费。  延期缴费协议期限最长不超过1年。  **第二十四条** 用人单位提供担保并签订延期缴费协议的，其职工在延缴期间按照规定享受社会保险待遇。  **第二十五条** 用人单位经责令仍未补缴且有下列情形之一的，社会保险经办机构可以按照社会保险法第六十三条第三款的规定，向所在地有管辖权的人民法院申请扣押、查封、拍卖用人单位财产，以拍卖所得抵缴应缴纳的社会保险费、滞纳金：  （一）经查询，用人单位开户银行账户余额少于应缴纳的社会保险费数额且未签订担保合同的；  （二）经划拨，用人单位仍未足额清偿应缴纳的社会保险费且未签订担保合同的；  （三）延期缴费协议期满，因担保财产的市场价格或者权利状况发生变化，用人单位仍未足额清偿应缴纳的社会保险费的。  **第二十六条** 社会保险经办机构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的，应当提供下列材料：  （一）强制执行申请书；  （二）用人单位欠缴社会保险费及加收滞纳金的事实、理由和依据；  （三）社会保险经办机构限期补缴通知；  （四）用人单位的意见；  （五）用人单位有本规定第二十五条所列情形时的相关材料；  （六）申请强制执行的用人单位财产情况；  （七）法律、行政法规规定以及人民法院要求的其他材料。  强制执行申请书应当由社会保险经办机构负责人签名，加盖社会保险经办机构的印章，并注明日期。  **第五章 法律责任**  **第二十七条** 社会保险行政部门及其工作人员作出划拨社会保险费决定时，有下列行为之一的，按照《中华人民共和国行政强制法》的规定，由上级社会保险行政部门或者有关部门责令改正，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给用人单位或者个人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一）违反法定程序作出划拨社会保险费决定的；  （二） 未在规定时限内及时作出划拨社会保险费决定并书面通知用人单位开户银行或者其他金融机构的；  （三）决定划拨的社会保险费数额错误的；  （四）向当事人泄露信息影响划拨社会保险费的；  （五）有违反法律、法规和规章的其他行为的。  **第二十八条** 社会保险经办机构及其工作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由社会保险行政部门责令改正，视情节轻重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相应处分：  （一）未按照本规定第八条核定或者确定用人单位应当缴纳的社会保险费数额的；  （二）对已征收的社会保险费未按照国家规定记账的；  （三）未依法责令欠缴社会保险费的用人单位限期补缴社会保险费、加收滞纳金的；  （四）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不符合规定的；  （五）签订担保合同和延期缴费协议不符合规定的；  （六）未按照规定审核、处置担保财产的；  （七）法律、法规和规章规定的其他情形。  **第二十九条** 社会保险经办机构擅自更改社会保险费缴费基数、费率，导致少收或者多收社会保险费的，由社会保险行政部门责令其追缴应当缴纳的社会保险费或者退还不应当缴纳的社会保险费；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第三十条** 用人单位未按照规定向社会保险经办机构进行缴费申报或者未按照规定缴纳社会保险费的，社会保险行政部门应当依法查处。  用人单位未按时足额缴纳社会保险费的,由社会保险经办机构按照社会保险法第八十六条的规定，责令其限期缴纳或者补足，并自欠缴之日起按日加收0.5‰的滞纳金；逾期仍不缴纳的，由社会保险行政部门处欠缴数额1倍以上3倍以下的罚款。  **第三十一条** 用人单位未按月将代扣代缴社会保险费明细情况告知职工本人，或者未按照规定通报、公布本单位全年社会保险费缴纳情况的，职工有权向社会保险行政部门举报、投诉。  **第六章 附 则**  **第三十二条** 社会保险费由税务机关征收的，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及时将用人单位和职工应缴社会保险费数额提供给税务机关；税务机关应当及时向社会保险经办机构提供用人单位和职工的缴费情况。  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按月将单位和个人缴纳失业保险费的情况提供给负责支付失业保险待遇的经办机构。  **第三十三条** 以个人身份参加社会保险的，社会保险费申报和缴纳办法另行规定。  **第三十四条** 本规定自2013年11月1日起施行。原劳动和社会保障部《社会保险费申报缴纳管理暂行办法》（劳动和社会保障部令第2号）同时废止。 |